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기후대응 등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 등 추가〉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3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기후대응 등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 추가 등 (안 제1조 및 제7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견태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3.

다.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감염병 대응, 재난·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1.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기후대응 등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 추가 등(안 제1조 및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목적 -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 기금의 용도 - 개발도상국의 <u>산업발전</u>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과 개도국간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중요사업(이하 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 개도국의 경제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 그 밖에 개도국의 <u>산업발전</u>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 수출입은행의 개도국 대상 경험증진 자금 대출 손실 보전 등 - <u><신 설></u>	○ 목적 -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u>기후변화 대응·보건·재난예방 등 글로벌 개발수요에 부응하며</u>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 기금의 용도 - 개발도상국의 <u>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보건·재난예방·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u>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과 개도국간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중요사업(이하 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개도국의 <u>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보건·재난예방·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u>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 <현행과 같음> - <u>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사후평가 및 성과 환류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u>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대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 재난예방,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용도에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사후평가 및 성과환류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명시하려는 것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고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차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기금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음.¹⁾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

1)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는 주로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무상원조를 지원하고 있음.

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2021년에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양극화 심화 등 국제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포용적 ODA’ 및 기후변화 대응, 녹색 전환 등을 위한 ‘상생하는 ODA’를 중점과제로 하고 있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EDCF의 중기계획인 「2025 ~ 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린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계획하고 지원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 기여 및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그린 EDCF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그린 EDCF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²⁾

[그린 분야 지원 목표]

기존 목표	신규 목표
(2025년) 22억불 (2026년) 25억불	(2025년) 24억불 (2026년) 26억불 (2027년) 27억불

주: 차관 승인금액 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舊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5. 2. 27.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지원사례]

분야	지원사례
기후변화 대응	· ADB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보증('24년, 100백만불) · 기후변화 회복력제고 프로그램차관('23년, 방글라데시, 90백만불)
보건	· 국립의과대학 건립사업('17년, 라오스, 103백만불) ·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기자재 공급사업('20년, 에티오피아, 30백만불)
재난예방	·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15년, 베트남, 30백만불)

자료: 재정경제부

2)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개, 한국수출입은행, 2024. 9.

이렇듯 최근 공적개발원조의 핵심 분야가 전통적인 경제·산업개발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보건·감염병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분야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건·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무상원조 ODA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으로 인해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상 기금의 목적으로 규정된 대외경제협력 촉진은 광의의 개념으로, 새로운 개발수요 출현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인프라 건설, 보증, 기자재 공급, 정책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목적을 추가할 실익이 부족하고, 목적 추가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개발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성과 환류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추가하고 있는데, 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발굴·집행·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전(全)단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실무적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이러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사업타당성 검토	환경사회영향평가	사업관리자문단	사후평가
194억원	42억원	40억원	11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로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타당성 검토, 모니터링, 사후평가 및 성과환류 비용을 지원 중이므로 법 개정 실익이 부족하고, 용도 추가시 법체계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u>지원하고</u>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u> · <u>보건·재난예방 등 글로벌 개발수</u> <u>요에 부응하며</u> ----- ----- ----- -----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 ----- -----.
1. 개도국의 <u>산업발전</u> 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 <u>에</u>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1. ----- <u>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보건·재난예방·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u> ----- ----- ----- ----- -----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개도국의 <u>산업발전</u> 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4. ----- <u>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보건·</u>

현 행	개 정 안
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u>재난예방·사회적 취약계층 보호</u> <u>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u> -- -----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u> <u>검토, 모니터링, 사후평가 및 성과</u> <u>환류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u>

문 의 처

02)6788-5151